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기간제근로자(정비사업지원역) 채용공고

1) 채용개요

소속	정비사업지원역	비고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18명	

2) 모집(채용지원) 분야

연번	모집분야	채용인원	계약기간	근무지
1	정비사업지원역	12명	26.12.07. ~27.12.06.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2		2명	26.12.07. ~27.12.06.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10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위례사무실 (추후 변동가능)
3		3명	26.12.07. ~27.12.06.	서울특별시 중구 한강대로 416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또는 서울특별시 내 현장 사무소(추후 변동가능)
4		1명	26.12.07. ~27.12.06.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13, 산본로데오 공영주차장 1층 군포미래도시지원센터 (추후 변동 가능)
	합계	**18명**		

○ 금회 채용은 정부 공급정책의 신속한 수행을 위해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채용이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닙니다.

○ 공사의 사업 여건에 따라 최초 모집분야 근무지에서 공사의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가 관할하는 타지역 사업본부로 기간제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간제근로자는 최초 근무 개시일로부터 근로계약으로 정한 기간(3개월 범위 이내)에 대해서는 업무적격성 등의 평가를 위한 수습기간으로 합니다.
- 수습기간 중 실시한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근무를 희망하는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관할 사업지구(아래 표 참조) 에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자는 채용 결격사유가 됩니다.

- 채용과정 및 근로계약 이후 제출서류가 허위 혹은 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관련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채용취소 또는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보유 제한 관련 지역본부 관할 사업지구 】

지역본부	사업유형	관할 사업지구
수도권 정비사업 특별본부	공공(참여) 재개발사업	신설1, 거여새마을, 중화5, 전농9, 신월7동-2, 장위9, 성북1, 신길1, 천호A1-1, 상계3, 봉천13, 면목9, 도림1, 신월5동-77, 안양충훈부, 시흥4동-4 숭인동1169, 창동470, 가리봉동2-92, 광명3, 광명6, 수원고색, 성남수진1, 성남신흥1, 성남태평3, 성남신흥3, 성남상대원3, 영등포영진시장, 서대문좌원상가
	도심복합사업	방학역 인근, 쌍문역 동측, 연신내역 인근, 쌍문역 서측, 신길2구역, 증산4구역, 용마터널 인근, 사가정역 인근, 신길15구역, 녹번역 인근, 불광1 근린공원, 상봉터미널 인근, 약수역 인근, 장위12구역, 수유12구역, 창2동 주민센터 인근, 용마산역 인근, 상봉역 인근, 불광2 329-32, 고덕역 인근, 영등포역 인근, 효창공원앞역 인근, 중곡역 인근, 신길4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미아16구역, 목4동 강서고 인근, 목동역 인근, 고은산 서측, 녹번동 근린공원, 국회대로, 인천 동암역, 부천원미, 성남금광2, 부천 중동역 동측, 부천 중동역 서측
	소규모정비사업	○가로주택 : 관악난곡A2, 광명광명, 광명광명2, 광진자양1, 금천시흥1, 금천시흥2, 금천시흥3, 금천시흥4, 금천시흥5, 금천시흥6, 금천시흥7, 금천시흥11, 남양주호평, 마포연남, 면목부림, 서울목동, 서울목동2, 서초방배, 서초양재, 성북종암, 송파석촌, 인천가정, 인천용현1, 인천용현2 ○자율주택 : 서울미아2 ○소규모재건축: 고척한성, 중랑장미
	공공재건축사업	중곡, 망우1, 신반포7차
	주거환경개선사업	인천송림4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군포산본9-2, 군포산본11, 군포산본12, 군포산본13, 분당목련6+S3

○ 모집분야(연번) 중 1개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모두 불합격 처리됩니다.

○ 계약 시작일은 예정일로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모집분야(연번)별 근로개시일에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을 먼저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의 효력은 모집분야(연번)별 근로개시일부터 발생하며, 계약기간 만료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3) 업무내용

모집분야	주요업무 및 직무내용
정비사업 지원역	1. 정비사업 수주 업무(동의서 징구, 후보지 발굴 등) 2. 주민설명회 기획 및 개최 지원 3. 주민총회, 주민대표회의, 전체회의 등 정기 회의 참석 및 지원 4. 토지등소유자 민원 대응, 질의 검토 및 답변 지원 5. 주민의견청취 및 행위제한 관련 현장 지원 6. 주민대표회의(조합) 관리 및 지원업무 전반 7. 주민대표회의(조합) 운영경비·의결사항 관리 지원

4) 자격요건

모집분야	자격요건
공통	o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o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본인의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사업본부 관할 사업지구 내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o 한국토지주택공사「직제규정」 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자(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근무 이력도 없어야 채용가능)
정비사업 지원역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 1. 정비사업 관련 민간자격(정비사업전문관리사, 도시정비전문관리사) 소지자 2. 정비사업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시공사 또는 조합(주민대표회의) 소속으로 도시정비 관련 실무를 수행한 기간

○ 한국토지주택공사「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인사규정」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제15조(채용금지)

1. 「인사규정」 제9조에 따른 채용금지 대상인 자
2. 공사에서 근로자로 퇴직한 이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파견 및 용역 근로자로서 본래의 직무 외에 기간제근로자와 동일 직무를 수행한 자 포함)
 * 경과기간은 종전 퇴직일로부터 신규 근로개시일까지이며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 상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한함
3. 만 18세 미만인 자(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직업교육훈련 현장실습 등을 나온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는 만 60세(현장관리직, 폐기물계근관리직은 만 65세) 이상인 자
4. 그 밖에 공사의 근로자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직제규정」제3조, 제4조, 제5조에 따른 임직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없는 자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의 근무 이력도 없어야 채용가능)

「직제규정」 제3조(사장), 제4조(상임이사), 제5조(직원)

제3조(사장)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4조(상임이사)
① 사장을 제외한 상임이사는 상임감사위원, 부사장, 본부장(수도권 지역본부장 포함)으로 하며 부사장은 본부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
② 상임감사위원은 관련 법령, 정관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③ 부사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사장이 정한 업무를 관장한다.
④ 본부장은 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인 본부장은 사장과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7조제1항의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직원)
① 공사의 직원은 일반직원, 전문위원, 별정직원 및 업무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일반직원의 직급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으로 구분하며, 1급의 직군은 경영직으로, 2급부터 6급까지의 직군은 사무직과 기술직으로 구분한다.
③ 전문위원은 「직원보수규정」제2조제1항제12호의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일반직원 중 임금피크제 적용전 직무와 책임에서 제외되는 직원으로서 적용기준, 표준 직무분야, 세부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④ 별정직원은 연구직, 특정직 및 체육직으로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상임이사 또는 일반직원에 상응하는 직급을 부여하며, 세부운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⑤ 업무직원의 처우, 표준 업무분야 및 세부운영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5) 급여조건

모집분야	급여조건
정비사업 지원역	급여수준 : 연간 예상 보수액 약 5,033만원 수준 (기본연봉 등 약 4,178만원+성과급 약 855만원) - 기본연봉 : 32,054,040원 - 성과급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 및 지급액 변경(산식=전년도 기본월봉 × 지급률, 차년도 지급) - 상기 연간 예상 보수액은 성과급(정부경영평가 중간등급 가정), 시간외근무수당(4시간 한도), 기술수당 등을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실제 지급액은 평가결과 및 근무기간,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직무수당에는 복지포인트 등 포함

6) 근무조건

구분	근무조건
공 통	o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주5일 근무 o 근 무 지 : '1)채용개요' 참조

○ 복지후생 등 그 외의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름

7) 채용절차

지원서 접수	서류심사	면접전형	최종선정
11.10.(화) 09:00~ 11.16.(월) 18:00	발표일: 11.25.(수)	면접일 : 11.27.(금)	12.03.(목)

○ 전형방법

구분	내용
서류전형 (1차심사)	-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합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평가기준 : 자기소개(30), 지원동기(30), 경험 및 경력(40), 가점(10) 계 / 자기소개 / 지원동기 / 경험 및 경력 / 가점(특별우대) 100+가점 / 30점 / 30점 / 40점 / 5점 또는 10점 - 선발인원 : 채용인원 1인 5배수 / 2인 3배수 / 3인 이상 2배수 - 동 점 자 : 전원합격 - 선정자 발표 및 면접안내 : 26.11.25.(수) 17:00 이후 개별통보 ※ 통보일 17시 30분까지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지원자는 반드시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통화(☎02-6400-5904)하여 서류전형 결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자메세지를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채용 결과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면접전형 (2차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전형 실시 - 평가기준 : 의사소통(30), 문제해결(40), 조직적응력(30), 가점(10) 계 / 의사소통능력 / 문제해결능력 / 조직적응력 / 가점(특별우대) 100+가점 / 30점 / 40점 / 30점 / 5점 또는 10점 - 합격인원 : 모집분야별 채용인원에 따름 - 예비합격자 : 모집분야별 3명(순위확정 선발) - 합격자 선정 : 면접점수 합계 고득점자순으로 선발하되, 70점 미만 득점자*는 과락(불합격) 처리 * 취업지원 가점 부여 시 가점을 포함한 점수(장애인 가점 제외) - 동 점 자 : 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 서류전형우수자* 순서에 따름

	* 서류전형 점수가 동일한 경우 '경험 및 경력 > 지원동기 > 자기소개 > 서류전형 외부위원 평균점수' 항목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자 - 최종 합격자 발표 : 26.12.03.(목) 17:00 이후 개별통보 ※ 통보일 17시 30분까지 문자메세지를 받지 못한 지원자는 반드시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채용담당자에게 유선통화(☎02-6400-5904)하여 서류전형 결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문자메세지를 못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이는 전적으로 지원자의 책임이며, 이에 따른 채용 결과에 대하여 우리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8) 우대사항

모집분야	우대대상		해당사항	가점
공통	특별우대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또는 10% 부여
		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	각 전형별 만점(100점)의 5% 부여
		※ 특별우대 우대사항은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 관련 법령에 따라 특별우대(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3인이하 모집분야에도 적용) *** 단, 취업지원 대상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가점을 적용하여 평가함.		

9) 지원서 접수 등

○ 접수기간 : 2026.11.10.(화) 09:00 ~ 2026.11.16.(월) 18:00

○ 접수방법 :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인터넷(온라인) 접수

* 접속경로 : LH홈페이지 > 새소식 > 채용정보 > 비정규직 채용공고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 본인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면접

당일 지원자격 및 우대사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면접전형 시 제출(지참) 서류(예정)

모집분야	제출대상	제출서류
공통	신분증(필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사본 1부 (진위 확인을 위한 원본 지참, 모바일 주민등록증 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수단으로 가능)
정비사업 지원역	자격(필수)	관련 자격증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1부

* 경력증명서는 경력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업무가 기재되어야 하며, 반드시 발급 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서류여야 함
다만, 발급기관 서식에 당사 요청사항(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 붙임 서식[별지 제9호 서식]으로 작성 및 제출

* 자격증의 경우 공고일(2026.11.02.)까지 취득한 경우에 한해 인정

10) 블라인드 채용 및 기타사항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블라인드 위반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제출 서류는 자격 및 우대요건 등의 진위 확인을 위해서만 활용되며, 심사위원 등에게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 등의 허위기재, 구비서류 미제출시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공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후 시행할 예정이며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일 공고건에서는 하나의 모집 분야만 선택하여 지원을 하여야 하며, 동일 공고건 채용공고에 중복하여 지원하는 경우 중복지원으로 간주하여 무효 처리됩니다.

○ 최종합격자가 2개월 이내 퇴사 시 별도 채용공고 없이 예비합격자 순서대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비리로 피해자 발생 시 당사 피해자 구제절차에 의거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번 채용의 불합격자는 채용관련 비위 또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E-mail(heee@lh.or.kr)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o 처리안내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
> [이의신청 처리 예외 사유]
> 1) 금번 채용과 무관하거나 이의제기와 상관없는 채용제도, 절차 등에 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2) 응시자 정보, 출제위원·평가위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지적재산권(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3) 그 밖에 상기에 준하는 사항

o 우리 공사는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부정 합격자(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에 대해 관련 법령 및 사규 등에 따라 해당 지원자 사전배제, 합격 후에도 불합격처리, 재응시 자격을 제한하며, 관련기관에 해당사실 통보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o 기간제 근로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11)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 제한 및 이해충돌 방지 관련 사항

○ 본 채용의 대상 업무는 업무 특성상 부동산 및 직무 관련 미공개정보를 취급하거나 이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합격자는 임용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①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토지 등의 매매나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② 근거법령(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 16 등)에 따른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 의무 준수

* 제한 부동산의 범위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에 따라 공사가 사업 수행을 위해 취득 예정인 토지 및 건물(관리 처분 방식 포함), 공사가 분양·공급하는 토지 및 건물(단 추첨제는 제외) ※ 관할 지역본부뿐만 아니라 모든 LH 사업에 해당

③ 직무수행 과정에서 사적 이해관계 등 이해충돌 사유가 발생하거나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른 신고·회피·기피 등의 의무 준수

④「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임직원 행동강령」등 기관의 관련 규정 및 기타 직무상 준수사항 이행

○ 위 사항에 관한 확인·신고를 위하여 기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 제출 요청, 투기행위에 대한 검증 및 조사 등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 위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 법령 및 기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며, 법령 또는 내부규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및 신고, 이해충돌 관련 신고·회피 등의 의무를 포함한 기관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의무사항 위반 시 관계 법령 및 기관 규정에 따라 최종합격을 취소하거나 근로계약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채용서류의 반환

○ 채용에 탈락한 지원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합니다.

* 다만, 동 법률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E-mail로 제출된 경우, 또는 지원자가 公社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제외

○ 청구방법 : 붙임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작성 후 본인 서명 및 날인하여 E-mail(heee@lh.or.kr)로 신청

○ 청구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간

○ 기타사항

- 청구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청구기한 이후「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반환서류는 E-mail 수신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으로 발송(소요비용은 公社가 부담)되며,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습니다.

13) 문의

○ 담당자 : 대리 김서희(전화 : 02-6400-5904 /
E-mail : heee@lh.or.kr)

2026년 11월 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장 (직인생략)